



손해보험의 이해 (19): 정책성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

김동겸 선임연구원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임.

- 정부는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2007년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였으며, ¹⁾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시행된 2010년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과 함께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운영의 근거법령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표 1〉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보험대상물	농작물(산림작물 포함) 및 시설물 (40개 품목)	가축 16축종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15개 품목)
보험대상 재해범위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피해 등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질병 등	태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대설, 동해, 낙뢰, 이상조류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보장수준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의 80~100%	보험가액의 80% 한도 내
정부지원	보험료 50%, 운영비 100%	보험료 50%, 운영비 50%	보험료 50%, 운영비 100%
보험사업자	NH생명·손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NH손해, LIG 컨소시엄(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	수협중앙회
제도도입	2001	1997	2008

자료: 김학용(2011), 『2011년 국정감사 정책제안 I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개선방안』.

1) 2008년 7월 육상수조식 넙치 품목에 대한 상품이 출시되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기 시작함.

- 2013년 기준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총 15품목이며,²⁾ 지역별로는 전국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운영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도입된 2008년부터 2개년 동안은 “넙치”에 대해서만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전복(2010년), 조피볼락, 굴, 김(2011년)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함.
- 한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는 태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대설, 동해, 낙뢰, 이상조류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등을 보험대상 재해범위로 삼고 있음.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사업대상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양식 어업인 및 양식업 관련 어업법인이며, 정부에서는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의 100%를 국고에서 보조지원하고 있음.
- 최근 3년 동안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³⁾ 추이를 보게 되면, 22.1%(2010년), 33.0%(2011년), 43.1%(2012년)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⁴⁾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은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함.⁵⁾
- 국가재보험제도는 수협중앙회가 원보험사업자로, 민영보험사가 재보험사업자로 참여하고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위험을 부담하는 모형임.
 - 손해율 140% 이하의 손해(통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업자가 인수하고, 민영보험사와의 재보험약정에 의해 20%를 보험사업자가 보유하며, 손해율 140%를 초과하는 손해(거대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함.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거대재해로 손해율이 급증할 경우 국가가 위험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200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일정기준의 손해율을 정하고 손해율이 사전에 약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보험기금을 통해 재보험금을 지급함.

2) 2013년 기준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 대상물로는 본사업의 경우 육상수조식 넙치가 있으며, 시범사업으로는 해상 가두리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연승수하식 굴, 부류식·지주식 김, 송어, 우렁챙이, 미역, 뽕장어 등이 있음.

3) 가축보험가입률 = (보험가입어가 수 / 보험가입대상어가 수) × 100

4)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2013), 2013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5) 2008년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국가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해 2009년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기금”을 설치하였으나,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 농어업재해보험기금으로 통합 운영됨.